

# 연구윤리규칙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단법인 제주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연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자에게 요구되는 윤리적 책무 및 위반에 대한 조치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연구원 소속 직원 및 연구보조 인력, 연구원에서 발주하는 연구 과제에 참여하여 연구를 수행하는 자, 연구원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책자 등에 투고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연구윤리와 관련하여 다른 특별한 규칙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한다.

제4조(용어의 정의) ①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 연구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비밀누설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적절한 출처 표시없이 연구에 사용하거나 자신이 이미 발표한 연구결과를 적절한 출처 표시없이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비밀누설”이라 함은 업무와 관련하여 습득한 중요한 정보나 자료를 제주연구원의 허락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6.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7.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등
8. 타인에게 상기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